백마중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예산 총칙

예산구분 : 추경3회

예산안확정일자	-	예산액	2,372,630,000

제1조 2020학년도 백마중학교회계3차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2,372,630,000원으로 하며 세입 · 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수익자부담금)와 관할청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지정 전입금, 보조금,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후에 보고한다.

제3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교원연구비
2.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3. 각종 공과금